


<p>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법 집행국 존 D. 마쉬(John D. Marsh) 국장</p> 	<h1>정보 공지</h1>	
<p>제목: 노인 및 장애인 피해자 관련 정책의 채택 및 개정</p>	<p>번호 2023-DLE-05</p>	<p>정보 문의: 존 D. 마쉬(John D. Marsh) 국장 법 집행국 (916) 210-6300</p>
	<p>날짜: 09/07/2023</p>	

대상: 모든 캘리포니아 지역 법 집행 기관

캘리포니아 법무부 법 집행국은 2019년에 통과된 상원 법안 338에 따라 지역 법 집행기관에 노인 및 장애인의 범죄 피해에 관한 서면 정책 요건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정보 공지를 발행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이후에 노인 및 부양 성인 학대 또는 노인 및 장애인 피해에 관한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하려는 시 경찰 또는 카운티 보안관 부서는 형법 368.6항 (c)호에 명시된 28개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정보 공지에서는 상원 법안 338 및 형법 368.6항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현지 법 집행기관이 서면으로 정책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법률 요약 사항 및 제안 조치를 제공합니다.

상원 법안 338

2019년 캘리포니아 주는 상원 법안 338("노인 및 장애인 정책법")을 제정하여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범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범죄임을 강조하며, "모든 지역 법 집행기관이 기관의 기존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지역적으로 개발된 프로토콜을 포함하여 이러한 범죄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Cal. Sen. Bill 338 (2019-2020 Reg. Sess.) § 1, subd. (a)(2), (4).) 상원 법안 338은 형법 368.6항을 추가하여 지역 법 집행기관이 노인 및 장애인 피해에 관한 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¹ 368.6항은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1. 상원 법안 338은 지역 법 집행기관이 노인 및 장애인 피해자 보호 정책에 28개 항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이후에 지역 법 집행기관에서 채택하거나 개정한 모든 노인 및 부양 성인 학대 또는 노인 및 장애인 피해자 정책에는 다음 28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Pen. Code, § 368.6, subd. (c)(1)-(28)):

¹ '노인 및 장애인 피해자'는 노인 및 부양가족 학대, 살인,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 및 실제 또는 인지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중요 범죄, 의무적 신고에 대한 불법적 방해 또는 관련 보호 명령 위반으로 정의됨. (Cal. Pen. Code, § 368.6, subd. (b)(13)(A)-(H).)

- (1)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노인 및 부양 성인 학대, 성폭행, 기타 성범죄, 증오 범죄, 가정 폭력, 인신매매, 고령으로 인한 장애와 간병인이 저지르는 범죄를 포함하여 성인 및 장애 아동 살인에 대한 정보.
- (2) 연령이나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존중하며, 범죄에 민사 처벌이 수반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노인, 성인 및 장애 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형사법을 양심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기관의 약속을 담은 성명서.
- (3)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는 사실에 관계없이 많은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점에 주목한 형법 제288항 (b)(2)호 및 제368항 (c) 및 (f)호에 명시된 공격의 정의와 요소.
- (4) (A) 노인 및 부양 성인 학대, 성범죄, 아동 학대, 가정 폭력 및 기타 범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고령으로 인한 장애를 포함하여 피해자가 가진 실제 또는 인지된 장애를 이유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증오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
(B)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발생하는 증오 범죄 혐의를 인지함에 있어, 이 정책은 담당관이 형법 422.87항 (a)(3)(B)-(C)호에 명시된 편견 동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편견으로 인해 가해자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징후가 있는지 고려하도록 지시합니다.
- (5)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담당관을 교육하기 위한 기관 프로토콜 및 일정:
 - (A) 형법 13515, 13515.25, 13515.27-13515.35, 13519.2항에 따라 평화 담당관 기준 및 훈련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자료. 각 해당 항에 명시된 교육 자료의 경우, 기관 프로토콜은 최소한 해당 항에 교육 대상 또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명시된 담당관 범주, 또는 해당 항에 교육 대상 또는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16)호에 따라 명시된 담당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B) 본 항에 따른 기관의 정책.
- (6) 담당관이 범죄 혐의에 대한 피해자 또는 목격자를 면담하려는 경우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청각 장애 또는 난청이 있음을 보고하거나 입증하는 경우, 담당관은 먼저 증거법 754항에 정의된 통역 서비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관은 정확한 통역을 보장하기 위해 통역 서비스 보안을 위한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합니다.

- (7) 파견 담당자, 지역사회 서비스 담당관, 안내데스크 직원 및 대중과 소통하는 기타 민간 직원에게 기관의 정책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 프로토콜.
- (8) (A) 담당관이 모든 노인 및 장애인 피해 신고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어떤 신고도 단순한 민사 문제나 다른 이유로 조사 없이 기각하지 않는다는 사실.
 - (B)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러한 조사의 요건을 설명하는 정책의 부록편:
 - (i) 기관 프로토콜 또는 Medi-Cal 사기 및 노인 학대 부서, 관할권을 가진 기타 주 법 집행기관, 성인 및 아동 보호 서비스, 지역 장기 요양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리고 적절한 경우 기타 책임 기관과 가능한 경우 협력 및 공조하기 위한 프로토콜.
 - (ii) 인지 또는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잠재적 피해자 및 목격자를 인터뷰할 때 사용하는 적절한 기법. 가능하다면 반복 인터뷰를 피할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iii) 조사 요소에는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I) 복지 및 기관법 972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성인 또는 아동 보호 서비스 기관, 지역 장기 요양 옴부즈맨 프로그램 및 기타 책임 있는 기관에서 접수한 이전 보고서를 확인합니다.
 - (II) 가능한 모든 피해자, 목격자, 용의자를 면담합니다.
 - (III) 모든 신체 착용 카메라 동영상 및 기타 모든 영상을 확인합니다.
 - (IV) 의무 신고자 또는 다른 발신자의 모든 통화를 청취합니다.
 - (V)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불법적인 간섭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 (iv) 법 집행기관이 기소를 권고하는 경우 해당 검찰청에 범죄 신고서를 전송하기 위한 기관 프로토콜.
 - (v) 기관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샌디에이고 카운티 노인 및 부양 성인 학대 청사진의 조사 대응 섹션 및 부록 B 또는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국립 노인 학대 센터의 법 집행을 위한 노인 학대 가이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 (9) (A) 형법 836항에 따라, 그리고 가정 폭력의 경우 형법 13701항에 따라 체포하거나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기관의 정책이라는 진술서. 정책에는 체포 영장 신청에 대한 기관의 프로토콜도 명시해야 합니다.
- (B) 가정 폭력 이외의 노인 및 장애인 피해에 대한 체포 관련 기관 프로토콜은 다음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i) 담당관이 있는 자리에서 관련 보호 명령 위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담당관은 피해자 또는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 (ii) 담당관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 중범죄의 경우, 담당관은 피해자 또는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타당한 경우 상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 (iii) 담당관이 있는 자리에서 경범죄인 의무 신고 불법 방해 또는 경범죄인 관련 보호 명령 위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피해자 또는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권장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상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체포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 (iv) 이 정책에는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범죄에 대해 상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기관의 프로토콜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10) 노인 및 장애인 대상 범죄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밀한 인간관계에 있는 보호자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이거나 동거인이었던 사람에 의한 폭력으로 일어난 경우를 포함하여 형법 제273.5항에 명시된 요소를 충족하는 경우, 이 역시 형법 제836항에 따른 강제 체포 요건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이라는 사실.
- (11) (A) 많은 성폭행 및 기타 성범죄 피해자들이 수치심, 당혹감, 자기 의심, 불신에 대한 두려움, 가해자 또는 타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유로 범죄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

- (B) 형법 264.2항 및 679.04항에 따라 성범죄의 잠재적 피해자는 자신이 선택한 도움을 받을 사람을 항상 동석하게 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지침.
- (12) 복지 및 기관법 15640항에 따른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관의 교차 보고 요건 및 이러한 교차 보고 요건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 프로토콜.
- (13) 담당관의 의무 보고 책임 및 담당관의 의무 보고 책임 수행을 위한 기관 프로토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의무 보고 요건.
- (14) 인지 및 의사소통 장애를 포함한 장애가 있는 피해자 및 목격자는 훈련을 받은 담당관이나 기타 훈련된 사람이 적절하게 면담할 경우 그들이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 (15) 인지 및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사람을 면담할 경우 고급 훈련을 받은 담당관 또는 다른 책임 기관의 직원이 면담을 담당하게 될 때까지 최초 대응 경찰관이 따라야 하는 절차. 이 절차에는 가능한 한 반복 면담을 피하라는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6) 기관의 부서 또는 사무실, 또는 여러 부서 또는 사무실, 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맡은 담당관 또는 담당관의 직위 또는 직책:
 - (A) 평화 담당관 기준 및 훈련 위원회, 미국 법무부, 스펙트럼 연구소의 장애 및 학대 프로젝트 또는 기타 출처에서 제공하는 노인 및 장애인 피해에 관한 고급 담당관 교육에 참여.
 - (B) 범죄 수사에 대한 법 집행 기관의 독점적 책임을 유지하면서 다른 책임 있는 기관과의 연락을 통해 기관 간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는 역할.
 - (C)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와 대중에게 다가가 노인 및 장애인 피해의 예방과 신고를 장려.
- (17) 가정법 6250항, (d)호에 따라 하루 중 언제든지 법원이 전화로 긴급 보호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프로토콜. 여기에는 담당관이 전화할 수 있는 법원 시스템 전화번호 및 담당관이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우 언제든지 기관 프로토콜을 활용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됩니다.
- (18) 모든 담당관은 부검을 포함한 완전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노인, 부양 성인, 기타 장애가 있는 성인 또는 아동의 설명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사망을 잠재적 살인

사건으로 취급해야 하며, 단순히 사망자의 연령이나 장애를 이유로 노인이나 장애인의 사망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요건.

- (19) 담당관이 관련 보호 명령이 발부되었음을 확인할 때마다 해당 명령이 총기 소지를 금지하거나 총기 포기를 요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건과 해당 명령이 있는 경우 담당관은 다음 각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건:
 - (A) 제지당한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문의할 것. 담당관은 구속된 사람과 보호 대상자에게 질문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 (B) 캘리포니아 주 법 집행 통신 시스템을 통해 구속된 사람에게 등록된 총기류가 있는지 조회합니다.
 - (C) 제6부 제2장 제4절(18250항으로 시작)에 따라 눈에 잘 띄는 곳에 있거나 합의 또는 기타 합법적인 수색에 따라 금지된 총기를 수령 또는 압수합니다.
- (20) 캘리포니아 주 피해자 보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민사 구제책 및 리소스.
- (21) 평화 담당관 기준 및 훈련 위원회가 본 항을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는 노인 및 장애인 피해자 관련 모델 정책의 전체 내용은 해당 모델 정책에 본 항에 열거된 항목 외에 다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항을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 (22) 해당 범위에 대한 모든 언급에서 "노인 학대" 또는 "성인 학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축약어를 사용함 없이 "노인 및 부양 성인 학대"라는 완전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 (23) 최초 대응 담당관의 책임에 대한 자세한 체크리스트에는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A) 잠재적 피해자 및 목격자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잠재적 피해자, 목격자 및 용의자를 존엄성과 존중으로 대합니다.
 - (B) 제9호에 따른 체포 및 강제 체포 영장 청구에 대한 기관의 정책 요건과 제17호에 따른 긴급 보호 명령 청구 요건을 준수합니다.

- (C) (15)호에 따라 인지 또는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사람과의 면담에 관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 (D) 인지 또는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일부 노인과 성인 및 아동은 사건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데 서툴거나, 단기 기억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취약성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담당관은 이들에게 동등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E) 일어난 장면을 문서화합니다.
 - (F) 잠재적 피해자로부터 서명이 있는 의료 동의서를 받습니다.
 - (G) 돌봄 제공자가 가해자인 경우도 있음을 인지하고 돌봄 제공자를 별도로 면담합니다.
 - (H) 기소를 위해 종종 피해자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피해자에게 기소 방지 선택을 허용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위협하여 사법을 방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각 출동 요청 전화 또는 사건은 그 자체의 증거적 가치에 따라 조사되어야 합니다.
 - (I) 본 항에 따른 법 집행 기관의 정책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 (24) 형법 368.5항에 따라 기타 담당 기관과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 또는 절차의 관련 내용.
- (25)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관 최고 경영자의 책임에 대한 진술:
- (A) 노인 및 장애인 대상 범죄의 주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등 기관 내 및 지역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범죄로 인해 공포와 충격을 받은 지역사회 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관의 지원 사항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해당 범죄 또는 유사한 과거 또는 미래의 범죄에 대한 피해자 및 목격자가 해당 범죄를 신고하도록 장려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 (B) 이 정책에 기관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포함시키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본 호에 따른 구체적인 책임을 수행합니다.
 - (C) 모든 담당관과 담당자는 정책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수행합니다.
- (26) 필요할 때 현장에서 담당관들이 정책을 열람할 수 있는 간단하고 즉각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모든 담당관에게 정책 및 관련 명령을 전송하고 주기적으로 재전송하기 위한 기관 프로토콜.
- (27) (A) 모든 담당관이 정책을 숙지하고 기관의 최고 책임자 또는 최고 책임자가 지정한 다른 감독 또는 지휘급 임원이 결정한 비정상적인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항상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
- (B) 정책에서 벗어나는 조치를 허용하도록 결정을 내린 책임자는 기관의 최고 책임자에게 비정상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을 명시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정책에는 피해자 및 신고 당사자에게 신고서 사본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 프로토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고 책임자는 최소 5년간 보고서를 보관해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 보호 및 옹호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 (28) 각 기관의 프로토콜에는 담당관의 구체적인 직책별 책임 목록 또는 프로토콜 이행을 담당하는 법 집행기관의 특정 사무실 또는 부서를 명시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이후에 채택되거나 수정된 정책은 요청 시 주 보호 및 옹호 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Pen. Code, § 368.6, subd. (d).) 현재 지정된 주정부 보호 및 옹호 기관은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리 단체(DRC)입니다.

2. 기관은 채택된 모든 노인 및 장애인 피해자 지원 정책과 **2021년 4월 13일** 이후에 개정된 모든 정책에 **28개**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상원 법안 338의 28개 항목 요건은 기관이 노인 및 장애인 피해자 정책을 채택하거나 기관이 2021년 4월 13일 이후에 형법 368.5항에 따라 실시한 개정을 포함하여 기존의 노인 및 장애인 피해자 정책을 개정할 때 적용됩니다. (Pen. Code, § 368.6, subd. (c); Cal. Assem. Bill 751(2022-2023 Reg. Sess.) §2(다음을 명시하고자 형법 368.6, (e)호 추가: "2021년 4월 13일 이후에 368.5항의 요건에 따라 노인 및 부양 성인 학대에 관한 정책을 채택, 수정하거나 이미 채택 또는 수정했던 법 집행기관은 이 섹션의 (c) 및 (d)호의 요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상원 법안 338을 준수하기 위한 제안 프로토콜

노인 및 장애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채택하는 지역 법 집행기관은 형법 368.6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존 노인 및 장애인 피해자 보호 정책이 있는 기관은 해당 정책을 검토하여 형법 368.6항에 나열된 28개 항목이 각각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이후에 정책을 업데이트했는데 28개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누락된 항목을 포함하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아직 정책을 수정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수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본 정보 공지는 개인 또는 단체를 위해 어떠한 권리도 창출하거나 부여하지 않으며,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요구 사항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 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법 집행국 John Marsh 국장에게 (916) 210-63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